

2020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0년 10월 29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6호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제3호·제9호,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회사채시장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10월 2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미국 및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상황이므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 연장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의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양상,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한다.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안)(생략)